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8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19일(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8. 19.(목)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한상덕 과장(044-203-5860) 이원희 과장(044-203-5870) 김기호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5862) 김학배 서기관(044-203-5874) 남의호 사무관(044-203-5886)

무역위원회, 제414차 회의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개시 -
- 이차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8. 19.(목)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 우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6.25)함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하여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한다.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한편,「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되었다.

○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전지와 달리, 사용(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

-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무역위원회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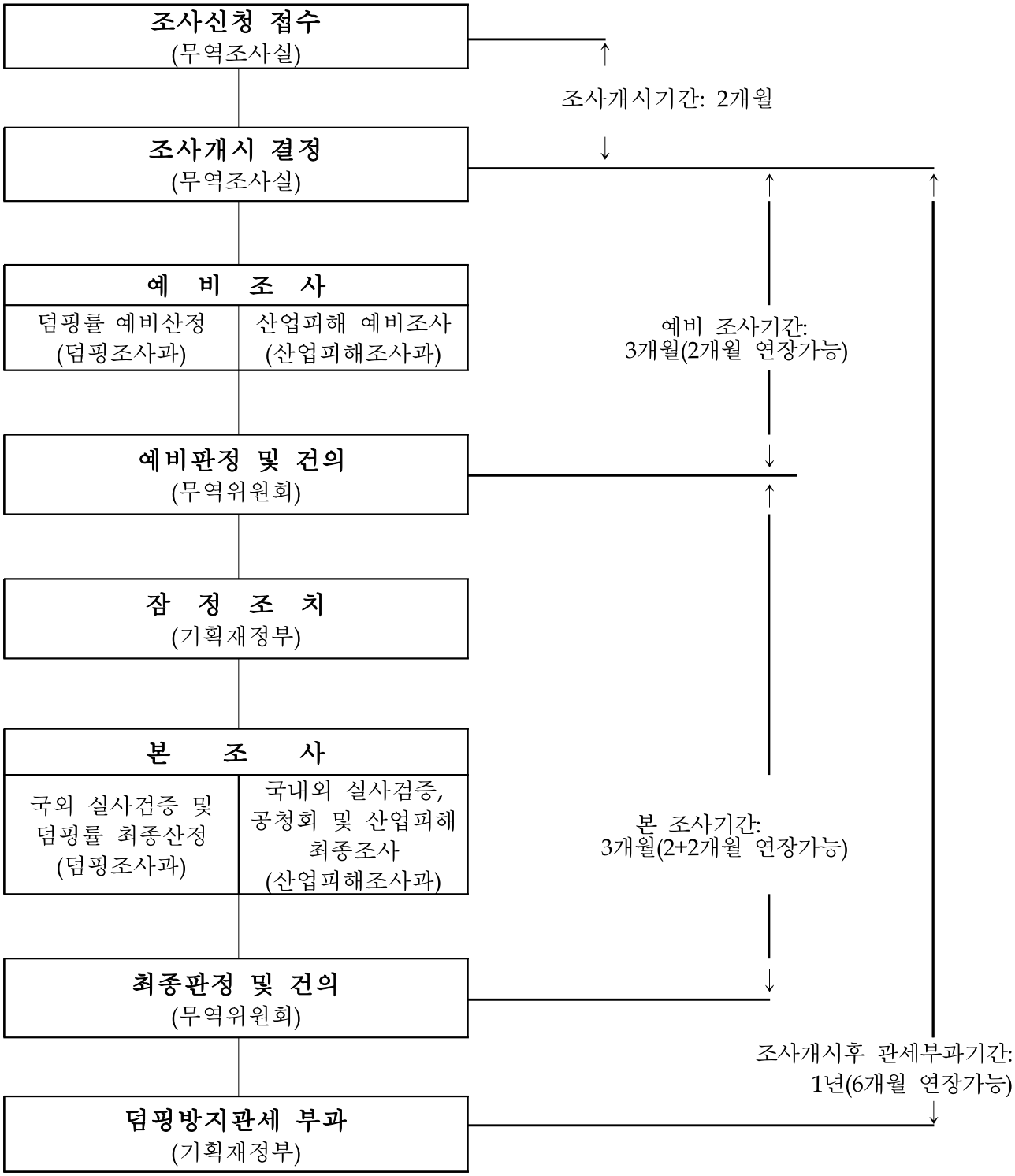
-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

-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김지은 사무관(044-203-5862), 덤핑조사과 김학배 서기관(044-203-5874), 불공정무역조사과 남의호 사무관(044-203-58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1)]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